

OECD 뇌물방지협약 가이드북

OECD Anti-Bribery Convention Guidebook





Content

UECD 되물망시업약의 의의	6
OECD 뇌물방지협약의 목적	6
OECD 뇌물방지협약 제정배경	6
OECD 뇌물방지협약 체결과정	7
OECD 뇌물방지협약의 특징	8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키로 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	*** 8
뇌물 제공자를 처벌	8
적용대상 확대	9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내용	••• 12
뇌물공여죄의 정의	12
뇌물공여죄의 대상	13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14
관할권과 범죄인인도	16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조치	18
OECD 뇌물방지협약의 법집행 성과	24

주요국가의 뇌물방지협약 적용사례	25
미국	25
스위스	26
독 일	27
일 본	28
한 국	29
OECD 협약과 국가신인도	36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체제	38
부록(Appendix)	
OECD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를 위한 협약(국·영문)	4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영문)	59
국제삼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회 권고(국 · 영문) 부속서 1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65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의 특별 조항 이행을 위한 모범 관행 지침(국 · 영문)	93
부속서 II :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에 관한 모범 관행 지침(국·영문)	99



OFCD 뇌물방지현약의 목적

OFCD 뇌물방지협약 제정배경

OECD 뇌물방지협약 체결과정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키로 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

뇌물 제공자를 처벌

적용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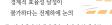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의의

OECD 뇌물방지협약의 목적

- 국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국제경쟁의 장' 구축
-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화 하고 뇌물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갓렴한 범규형과 짓역형을 부과함 것을 요구

OECD 뇌물방지협약 제정배경

- 국제상거래에서 기업들의 동등한 경쟁기회(a level playing field)를 보장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함
 - 뇌물제공 행위가 선진국 등 일부 기업만 금지되어 있고, 또한 각종의 부패로 인한 진입장벽 발생 시 정제적 효율성 달성이



즉, 상거래의 부패관행은 기업의 부패자금 조성을 위한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져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과 효율적인 수준이하의 공급을 가져와 사회전반적 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a level playing-field

- 또한, 부패관행을 통한 상거래는 상대기업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독점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 국제무역과 투자의 중진을 저해하며, 심각한 도덕적, 정치적 우려를 야기







OECD 뇌물방지현약의 의의

- 국제삿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를 위한 국제적 곳조 필요
 - 동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미국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한 유일한 국가
 -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기준 부매방서법을 확대, 작용하거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로 뇌물제공자를 민사상으로 처릴 할 수 있었고¹⁰ 호주, 벨기에, 덴마크, 일본,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이온 뇌물제공자를 형사처벌 항 번적 근거가 암영운

OECD 뇌물방지협약 체결과정

- 28개 OECD회원국 및 5개 비회원국 대표 포함 총 33개국"은 국제상가례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997년 12월 17일, 뇌물방지협약³³과 그 주혜에 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약의 확산과 충실한 이행을 위한 감시계세의 모입에 공동 합의함
 - 동 협약은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9년 2월 15일 발효됨⁴
 - 우리나라는 국내 이행을 위해 지난 1998년 12월 28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장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특별법 으로 제정하고 1999년 2월 15일 OECD뇌물방지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됨
 - 2012년 5월 현재 동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39개국임⁵⁾

- 1) 前者는 캐나다, 그리스,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터키, 영국이 이에 해당하며 後者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 웨이 그리고 스위스임
- OECD회원국 중 호주는 '98년 12월 7일 서명함
- 3) 동 합약이 발효되려면 OECD 회원국 상위 수출국 10개국 중 5개국이 비준하고, 동 5개국 수출총액이 상위 10개국 전체 수출액의 60%를 상회하여야 합변약 제15조)
- 4) OECD 회원국(30개국) 이외 통 협약에 서명한 비회원국 은 6개국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슬로 바키아공화국, 에스토니아임
- OECD회원국(34개국) 이외 동 협약에 서명한 비회원국은 5개국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임



OECD 뇌물방지협약의 특징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를 규정키로 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대규모 공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국의 고위관리에게 뇌물을 추는 행위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일부분일 뿐, 범죄라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주요 국제거래의 15% 이상이 뇌물 비용으로 추계되기도 하였다. 이는 각국의 국내법 체계가 내국인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법공조의 미성숙 으로 국제적인 뇌물공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OECD는 이에따라

1994년 이후 여러차례 관련 권고를 제약 하여 각국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뇌물에 대한 세금공제(tax deductibility)를 금지도록 요청하고, 사법공조를 강화하도록 권교해 왔으며 동 협약은 이 같은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뇌물 제공자를 처벌

모든 나라는 국내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제재하기 위하여 형법 또는 특별법을 통해 뇌물의 수회와 중의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다시 말해 뇌물을 요구하는 수요자와 뇌물을 제공하는 공급자를 모두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OECD 뇌물방치현약은 뇌물을 주는 해외에 대해서만 규용하다.





뇌물을 주는 행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OECD 뇌물방지협약의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으나, 국가주권의 원칙상 자국의 행사관할 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장무원을 처벌할 수 없는 데 따른 불가 되한 조치라 할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적어도 가입국간에는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뇌물광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당국간 사법공조가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수회사실이 드러나게 되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 소속국은 국내 뇌물법으로 동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외국 공무원의 범주에 입법, 행정 또는 사법상의 임명 또는 선출직 직위를 가진 자와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자 및 국제기구 공무원도 포함

국회의원의 포함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일부 국가가 국회 의원의 世책목권을 고려하여 제외한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포함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반면 정당에 대한 뇌물은 제외되었다. 한편 협약 규정상 뇌물은 국제상거대화장에서 발생한 뇌물에 한정되어, 뇌물에는 영업을 취득 또는 유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 제의, 약속하는 금전적 또는 여타의 이익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하였고, 처벌대상에는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탭인도 포함시키고, 뇌물에 대한 모수와 추징은 물론 뇌물로 취득한 이익까지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뇌물공여죄의 정의

뇌물공여죄의 대상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관할권과 범인인도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조치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내용

뇌물공여죄의 정의

- 동 협약에서 각국의 법률체제하에서 형사범죄로 처벌되는 뇌물공여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국제상거래에서 ②사업상의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유지)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③외국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④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하여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 공직자나 제3자를 위하여 당해 공직자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임(현안 제) 조 제(항)
 - 즉, 뇌물을 실제 주는 행위 뿐 아니라, 뇌물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뇌물에 관하여 약속하는 행위 모두 협약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행위임
 - 놔물제공행위는 이익의 가치나 놔물제공의 결과, 해당지역의 관행, 또는 거래를 위한 놔물 공여의 필요 여부, 놔물제공자? 입찰자격자를 중 사실상 최적격자 있는지 여부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서 범법이 (협약우석 제7조)







뇌물공여죄의 대상

- 외국공무원은 입법, 사법, 행정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과 공기업의 선출직과 임명직을 포함하며, 외국을 위하여 공적가능을 수행하는 자와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적용대상임(현약 제조 제4화 가호)
 - 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약속 내지 제공된 이익도 범죄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다만 적용범위나 대상 등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추가적 검토를 수행하기로 함
 - 일당체제 국가의 당료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 하는 개인도 공직자로 가주될 수 있음
 - OECD 뇌물방지협약상의 외국정부에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음 (협약 제1조 제4항 나호)
- 공기업은 법인형태와 관계없이 정부가 집·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시하는 기업으로, 예컨대 5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였거나 주식표결권 또는 임원의 괴반수를 통제하는 경우임(협약주석 제14~15조)
 - 단,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체와 동등한 경쟁관계 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부로부터 특별한 보조금이나 특해를 받지 않는 경우 동 협약 적용에 있어 공기업으로 보지 아니함(협약주석 제14~15조)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 처벌 수준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국내 공무원 뇌물증뢰의 법정형에 상용하는 범위여야 함(협약 제3조 제1항)
 - 자연인인 경우, 효과적인 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수준에서 자유가 박탈됨
 - 금전상으로는 제공된 뇌물 및 뇌물공여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절한 한도내에서 압류 및
 몰수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함
 - 단, 이 항은 금전상 제재에 대한 적절한 범위의 설정을 배제하지 않고
 - 각 당사국은 추가로 민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조치를 가하는 문제를 고려함(협약 주석 제3조 제4항)
- 각 당사국은 자국내 법률상 원칙에 의거, 법인의 책임을 설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되, 법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 적용이 어렵다면, 당사국은 재발방지차원에서 금전상 제재를 포함한 비형사적 제재를 취하여야 함(함약 제2조 및 제3조 제2항)



OECD 뇌물방지현약의 주요내용

- 또한,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조치에는 용의 범금 이외 ()관적 이익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정부조달 또는 기타 상업활동에서 한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박말 ③법정관리대상 지정 ()법원명령에 의한 해산 등이 포함됨(현약수석 제3조 제4항)
- 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이라 함)에 의하면 뇌물 공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만약 법죄행위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5번 이하의 장역 또는 뇌물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을 함께 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을 사실상 발탁할 수 있는 벌금제도를 요구하는 협약내용에 따름
- 법인을 포함한 범인이나 그 이외의 자가 취득한, 동법에 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은 몰수함(국제상거래뇌물 방지법 제5조)



-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 원칙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와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현약 제2조)
 -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및 기타 종원업 등이 그 법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만약 법법에 따른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단계상거래 뇌물방치법 제4조)
 - 단, 범죄행위 방지를 위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될 수 있음(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제4조)

관할권과 범죄인인도

■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관할권은 속지 주의와 속인주의가 동시에 적용됨

 뇌물공여죄가 전부 또는 일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 하면 각 당사국은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며,









OECD 뇌물방지현약의 주요내용

-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자국민의 해외 뇌물죄에 대한 기소관할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관할권이 경한됨 때에는 관련 국가들은 현약에 의거 관합권을 실제 행사함 국가름 결정하기 위하여 삿호혐의하도록 규정하고 인으(현약 제4주 제3항)⁽⁶⁾
-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당사국들의 법률이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협약 제10조)
 - 따라서 범죄인인도조약이 없는 국가로부터 인도요청이 있으면 이 협약이 그 법적 근거로 간주될 수 있음7
 - 각 당사국은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자국민을 인도 내지는 기소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 만약 범죄인인도 요청음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다면 해당국은 기소를 목적으로 자국내 관할당국에 이 사건을 위임하여야 함
- 6) EU 부패방지합약(CFCE)에서는 관합권의 경합시 각 당사군에서 자형된 뇌물의 규모, 관할권 행사의 우선순위 체포장소 국적 그리고 과거 기소사실 등을 참고하여 협의함(제9조)
- 7)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하여 자국민 인도를 위해서는 법죄인인도 조약이 필요하지만 외국인을 인도하는 데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이 현약을 자국민 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음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

[자금세탁]

- 자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 범죄로 간주하는 국가는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자금세탁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현약 제7조)[®]
 - 바꿔 말하면, 동 조항에 따라 뇌물제공행위가 자금세탁을 유발하는 범법행위로 간주된다면 외국 공직자에게 지불된 자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뇌물제공과 별도로 자금 세탁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
- 세탁을 자금세탁법의 범법 형위로 간주함 9) 미국의 경우 FCPA의 위반을 미연방 자금세탁방지법의 구체적인 위법행위(specified unlawful activities)로 간주 하여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임을 인지하고, 금융거래를 수행하거나(knowing conduct) 수행하려는 행위 또는 뇌물 제공을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군내외간에 자금을 이동하거나 제공받은 뇌물의 성격 · 위치 · 출처 또는 소유를 은폐하기 위한 자금 이전인을 알면서 이를 이행하는 행위를 자금 세탁방지법으로 처벌한 따라서 불번자금을 취급하는 금융 기관도 동 조항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음

8)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는 FATF 권고안 제4조에 제시된 바와 동일하게

마약관련 범죄 이외 '심각한'

벙번행위로 습득한 자금의









OECD 뇌물방지현약의 주요내용

- 한편, '자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은 포괄적(broad) 의미로서 사용되어야 함 10)
 - 예컨대, 당사국이 자국 공무원의 능동적인(active) 뇌물제공 또는 수동적인(passive) 뇌물수령을 자금 세탁 목적의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같은 성격의 범죄로 자금 세탁법의 저촉음 받아야 함
 - 따라서 자국 공무원의 수동적 뇌물수령을 자금세탁 목적의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 동 조항은 뇌물에 제공된 자금의 세탁에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야 합10

¹⁰⁾ 여기서 뇌물은 bribe가 아닌 bribery로 쓰여지므로 뇌물자금 자체뿐만 아니라 뇌물로 얻어지는 수익 (proceeds)도 자금세탁 방지법의 규제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¹¹⁾ 그러나 현약은 능동적인 뇌물수수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

[회계처리]

- 회계장부 및 기록, 재무제표 공시, 그리고 회계 및 감사 기준에 관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기업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장부를 작성 하거나 불법・미확인된 상거래 혹은 하위지율을 하거나 또는 부정확한 채무내역기입 기타 허위묘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각 당시국은 자체 법 및 규정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기 기업들의 회계관리 소홀 및 위조에 대하여 효과적인 그리고 균형잡힌 제발방지 차원에서 민사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부과함(협약 제8조)









OECD 뇌물방지현약의 주요내용

- 1997년도 이사회 개정권고는 각 당사국이 기업회계의 의무화 내지는 강화 그리고 독립적 외부감사 및 기업 내부의 통제실시 등에 대한 일련의 권고를 제시하고 있음(1997년도 이사회 개정권고안 제5조)12
 - 주석에 따르면 동 조항은 회계감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인으며 특히 뇌물행위가 외국에서 밤샋하더라도 회계상의 법규위반은 기업의 본국에서 보통 발생하며.
 - 불확정채무름 곳개하는 재정보고서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이 뇌물방지협약의 적용으로 이에 따른 잠정적인 의무와 유죄판결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 동 조항은 뇌물제공을 방지하는 데 즉각적인 그리고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

¹²⁾ OECD는 1994년 뇌물에 관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finn)를 채택한 이래 두 권고를 1997년, 2009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





	국
스우	스
독	일
일	본
한	국



OECD 뇌물방지협약의 법집행 성과

- 지난 10년간 이행된 OECD뇌물방지협약은 199명의 자연인과 91개의 법인 포함 총 290건에 대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사건을 형사처벌함
 - 또한 현재 약 260건의 외국뇌물 사건이 15개 협약당사국 에서 조사중이며, 추가적으로 120명의 자연인과 20개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짐







주요국가의 뇌물방지협약 적용사례

미구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엔지니어링 - 건설회사인 KBR은 에너지 기업인 헬리버튼의 자회사였다가 2007년 분리되었다. 2009년 2월 KBR은 1994년~2004년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의 60억 달러 LNG 공장 건설계약 수주를 위해 나이지리아 공무원들에게 1억 8,00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사범당국에 의해 기소되어 연방법위에서 유래를 인정하였다.

2009년 KBR은 5억 7,900만 달러의 별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별금액은 FCPA 위반에 대한 별금순위 1위인 지멘스(8억 달러)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별금액으로 미국 기업으로서는 가장 높은 병금액을 기록했다.

금번 사건 관련 나이지리아 정부는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2001년 미국대선 전까지 핼리비튼의 최고정영자로 제직했던 시절 발생한 사건이므로 딕 체니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8명의 관련자들과 함께 제소대상에 포함하였다. 2010년 12월

핼리버튼측이 2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하고 딕 체니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였다

지멘스

KBR

스위스

세계적 스위스 물류회사인 Panalpina는 전세계 80여개 나라에 진출한 기억으로 I만 4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스위스의 증권시장에 상황된 물류분야 상위기업중 하나이다. Panalpina는에너지 회사들을 위해 원유 시주장비와 같은 장비들을 세계 여러 나라로 운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판 통과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나이지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알레리, 카자흐스반의 공무원들에게 2002년부터 2007년 까지 뇌물용 약 2,700만 달리 상당을 제공하였다.

Panalpina의 고객인 6개의 에너지 회사들은 Panalpina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또는 화물운송료 전부 또는 그 가운데 일부가 뇌물로 전달되리라는 점을 알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위로 회계작부를 가재하였 다는 협의가 적용되었다. 6개 에너지 회사들에는 Royal Dutch

> Shell(미국/네덜란드) 같은 석유회사와 Nabors Industries Ltd와 같은 에너지 개발 서비스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 > Panalpina와 고객인 6개 에너지 회사가 2010년 11월 4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위반으로 약 2억 3,650만 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남사하기로 한의했다









주요국가의 뇌물방지현약 적용사례

이 합의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및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이루어졌고. 한의 금액가운데 형사벌금(criminal fine) 1억 5 650만 달러와 민사적 이익 환수금(disgorgement) 이자 그리고 짓벌금 (penalty) 8천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7개의 벌금처분을 받은 기업들 중, Panalpina, Pride, Shell은 각각 8,180만 달러, 5 610만 달러 4 81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독 일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총 18억 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지멘스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 사이에 이라크 나이지리아름 포함한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외국공무원들에게 14억 달러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2008년 12월 미국과 독일 에서 각각 8억 달러와 8억 5 600만 달러 벌금에 한의하여 FCPA 역사삿 최대 처벌 금액(16억 달러)으로 기록되었다

지메스의 뇌묵 곳여 사건은 규모나 지리전 범위에 있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여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 이외에 지메스는 갓력한 유리 ·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무도 부과반은 것으로 악려졌다

일 본

2011, 4월 일본 대형플랜트 엔지나이링사인 JGC는 나이지라아에 액화천연가소·공장을 건립하면서 나이지라아 공무원에 뇌물을 준 것이 미국 검찰에 생되되었다. 미국 법정에 선 JGC는 결국 2억 2 000와 달린의 제재한의국을 자봉해야 했다

JG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물론 미국에 지사를 둔 외국기업, 뉴욕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이동하는 기업 등 미국과 최소한의 contact point가 있으면 미국의 해외부패방치법(FCPA)을 적용 처벌하고 있다.







주요국가의 뇌물방지현약 적용사례

한 국

사 례 1

● 사건개요

- 국내 건설업체 ㅇㅇ사 사장이 미8군 계약처장인 현역 육군 대령에게 5회에 걸쳐 총 40만 불의 뇌물을 제곳하여 주한 미군 발주 건설공사계약을 낙찰



● 처벌내용

- 사장에게 짓역 1년 6월 1천만원 벌금형 선고 및 법인에 벌금 1억원 선고
- '02 10월 서울고법 항소심 원심 활정 판결 및 집행유예 3년

사례 2

• 사건개요

 주한 미군으로부터 입찰자격을 취소당한 납품업체 ○○사의 대표가 입찰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8군 회계담당직원에 36회에 걸쳐 5.100만의 뇌물 공여

● 처벌내용

- 대표에게 짓역 10월 1천만원 벌금형 선고
- '04, 4월 서울고법 항소 기각, 원심 확정

사례 3.4

• 사건개요

- ○ 사 납품업체 대표 ○ 이 납품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주한 미군 구매 담당직원에게 2000, 9월~2002,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1 15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곳여
- △△사 대표 △△△이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통 미군 직원에게 2000, 9월 ~ 2003,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370만원 상당의 뇌물음 제공

● 처벌내용

- '04. 3월 ○○○벌금 700만원, △△△ 벌금 150만원 확정

사례 5

● 사건개요

○○사 대표이사 ○○○이 2002. 3월 ~ 12월까지 8회에 걸쳐 주한 미근 물통 남품을 위한 공개입찰에 다른 회사의 응찰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남품 편의재공 명목으로 남품담당 미군에게 2001. 10월 ~ 2003. 2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2,505만원의 뇌물 공여

● 처벌내용

'04 5월 ○○○ 벌금 500만원 및 법인에 벌금 500만원 확정







주요국가의 뇌물방지현약 적용사례

사례 6

● 사건개요

○○사 대표이사 ○○○이 계약 갯신음 위한 편의제곳 목적 으로 주한 미군 청소용역 담당직원에게 2003. 8월 회사 사업팀장 △△△에게 지시하여 1 100만원의 뇌물음 곳여하고 2003 10월~2004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00만원음 직접 공여

● 처벌내용

- '04 11월 ○○○ 벌금 700만원 △△△ 벌금 300만원 확정

사 례 7

● 사건개요

- 경비용역업체 대표이사 ○○○과 회장 △△△, 브로커 ㅁㅁㅁ 등이 현력하여 보안경비계약 수주 목적으로 주하미군측 계약관에게 2003. 6월 ~ 7월 총 4회에 걸쳐 2억 5천만여원의 뇌물 곳여

● 처벌내용

- '07, 4월 ○○○ 징역 8개월, 2백만원 벌금형 선고, △△△ '07 2월 2백만원 벌금형 선고

사례 8

• 사건개요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미군통신서비스 계약 수주 및 계약 유지 목적으로 2001, 11월 ~2005, 8월 미군 아시아 태평양 서비스 운영핵임자 등에게 41회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

● 처벌내용

- '06, 11월 △△△ 벌금 1,000만원, ○○○ 벌금 2,000만원 확정

사례 9

• 사건개요

 ○○상인회 임원들인 ○○○, △△△, ☆☆☆ 이 공모하여 통관편의 목적으로 2005, 1월~2006, 2월 중국세관 공무원 에게 22회에 검쳐 2.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

● 처벌내용

- '08. 6월 ○○○ 벌금 200만원, △△△ 벌금 100만원, ☆☆☆ 벌금 100만원







주요국가의 뇌물방지협약 적용사례

사 례 10

• 사건개요

화물은솟주선업체 대표 ○○○은 2006 5월~2011 1월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하고 운송화물량을 늘려달라며 즛국 국영 항공업체인 △△사의 한국지사장에게 53억원음 공여, 한국☆☆ 여행사 대표 ☆☆☆는 △△사의 한국지사장 에게 중국행 항공티켓 판매독점권을 보장해 달라며 14억원의 뇌물을 제곳

● 처벌내용

- '11. 5월 인천지검 기소. 현재 인천지법 재판 진행 중임







OECD 협약과 국가신인도

■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수출 비중이 대선진국 보다 높음

- 부패가 높은 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주로 하는 국내기업에게 뇌물방지현약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제품의 총액은 2010년 기준 3,345억 달래(72%)로 주요 선진국 수출액(1,317억 달러, 28%)를 상회



 또한 우리기업이 관행적인 비리에 익숙한 반면 객관적인 회계기준과 외부간사제도 등의 부패감시체제에 대한 경험은 미흡하므로 기존 관행에 따른 영업활동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뇌물방지협약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음

OECD 협약과 국가신인도





한국의 부패상황

*국제투명성기구(TI)의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

구분	조사대상국	순위	점수
2003	133	50	4.3
2004	146	47	4.5
2005	159	40	5.0
2006	163	42	5.1
2007	180	43	5.1
2008	180	40	5.6
2009	180	39	5.5
2010	178	39	5.4
2011	183	43	5.4

- IMD 국가경쟁력 중「뇌물공여와 부패비리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정부효율성 부문 순위: 22위/59개국
- 국제투명성기구의 BPI(Bribe Pavers Index)순위

구 분	'99	102	'06	'08	'11
점 수	3.4	3.9	5.8	7.5	7.9
순위/전체대상국	18/19	18/21	21/30	14/22	13/28

- 현실적으로 국가 신인도 하락은 우리나라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리 기업활동이 국제적으로 중점 감시대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신뢰도 추락에 따라 사업수주에 제약음 받게됨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체제

뇌물방지협약은 OECD가 주도하여 제정한 규범이나 여타 OECD 규범과 달리 일반 국제협약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가입국들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렇지만 가입국들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OECD 규범이행의 기본방식인 동료 신사제도(Peer review)와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의 행사를 채택하고 있다.

OECD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은 1994년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OECD 뇌물방지협약 제12조에 의거하여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정검하고 중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료심사제도와 동료압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회원국 중에서 지정된 주심사국(2개국)과 OECD사무국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수개월간 십사대상이 되는 국가의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수집과 변밀한 검토작업을 거쳐 그 결과 OECD 내부문서로 발간한 후 여타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검토케 한다. 그런 다음 전체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대상 회원국에 대해 접증적인 절의와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리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충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이 심사제도인데 이 과정에서 회원국간 제도개선이나 이행을 위한 집ㆍ간접적인 동료압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현약의 이햇체제

■ 제1단계 심사

- 제1단계 심사는 1999년 4월부터 회원국들이 뇌물방지협약 기준 및 1997년 이사회 개정권고에 부합하게 국내이행법을 제정하였는지 평가
- 각국에서 제출한 협약이행 상황 서면보고를 바탕으로 OECD 본부에서 2개월에 5개국씩 심사를 실시
-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제1단계 심사를 완료

■ 제2단계 심사

- 제2단계 심사는 국별 현장방문을 통해 각 회원국별 협약이행 관련법의 실제 국내 격용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협약을 실제 적용하여 외국장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국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
- 2001년 11월 핀란드를 처음으로 현재 38개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됨
- 2004년 6월 호주와 핀란드의 정부대표단과 OECD 반부패 전문가로 구성된 OECD실사팀(On-site visit team)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국가청렴위원회, 법무부, 대경, 감사원 및 NGO 등 50여개 기관에 대한 2단계 현장심사를 실시함
- 우리나라에 대한 2단계 심사보고서에 대한 협약당사국 전체 검토가 2004년 11월 OECD뇌물방지작업반 전체회의에서 실시됨

■ 제3단계 심사

- 제3단계 심사는 보다 실질적인 협약 이행·처벌을 독려하기 위해 '09년 12월 도입된 절차로 2단계 심사 시 지적된 국별 이슈와 공통 이슈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 2010년 10월 핀란드 및 미국을 시작으로 3단계 심사카 시작 되었으며, 2014년 말까지 전 회원국에 대한 3단계 심사를 완료 할 예정임
- 우리나라에 대한 3단계 현장심사는 2011, 5, 31∼6, 2일 핀란
 드와 이스라엘을 주심사국으로 실사되었다.
- 2011년 10월 OECD작업반 전체회의 시 우리나라에 대한 제3단계 심사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정도 · 협약위반 사례(13건) 적발 등을 통해 OECD 회원국 중 협약이행에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국·영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영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회 권고 (국·영문)

부속서 I: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의 특별 조항 이행을 위한 모범 관행 지침(국·영문)

부속서 II: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에 관한 모범 관행 지침(국·영문)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협약

전문(前文)

체약당사국은

뇌묵제곳이 무역과 투자를 포한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마연되 현삿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 정치적 우려름 야기하고 올바른 국가경영과 경제개발음 저해하며 국제적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모든 국가는 국제삿거래에 있어 뇌물제곳 방지름 위한 책임음 곳유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1997년 5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삿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개젓권고"가 국제삿거래 와 관련한 외국곳무원에 대한 뇌물제곳햇위의 억제 ·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특히 효율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개정권고에 명기된 공통합의사항 및 각국의 관할권 기타 기본적 법률원칙에 의하여, 그와 같은 뇌물제공행위를 조속히 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유념하고,

국제연합 · 세계은행 · 국제통화기금 · 세계무역기구 · 미주기구 · 구주이사회 및 구주연합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뇌물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이해 및 협력을 더욱 중진시키려는 최근의 여타 추세름 환영하며

뇌물제곳 방지름 위한 기업 · 경제단체 · 노돗조한 기타 비정부 기구의 노력을 확영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뇌물권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며

이 분야에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국가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현력 · 감시 및 후속조치가 요구됨을 인식하고

체약닷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들간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이 현약의 중요한 대상과 목적이며 이름 위하여 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협약이 비준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현약





제1조 (외국공무원에 대하 뇌목 제공 범죄)

- ①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외국곳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돗인에게 당해 곳무워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고의전으로 부당하 금저 기타의 이익을 제의 · 약속하거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자국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곳무원에 대한 뇌물제곳행위를 교사 · 권유 · 방조하는 등의 공모 또는 이를 승인하는 행위를 형사상의 범죄로 규젓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국곳무원에 대한 뇌물제곳햇위의 미수 및 음모는 체약당사국의 자국 공무 워에 대하 뇌묵제곳 해외의 미수 및 은모와 같은 정도의 형사 상의 범죄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이하에서 "외국곳무원에 대한 즛뢰죄"라 한다
- ④ 이 현양에서
 - 가, "외국공무원"이라 함은 선출직 또는 임명직을 불문하고 외국의 입법 · 햇젓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는 자 곳곳기관 또는 곳기업을 위하여 곳적기능을 수행하는 자름 비롯하여 외국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나 "외국"이라 함은 즛앗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모든 단계와 하위단체를 포함하다
 - 다. "공적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승인된 직무범위안 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당해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법인의 책임)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 원칙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 죄와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처벌)

- ①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좌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형별료써 처벌되어야 한다. 법정형은 자국의 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법정형에 상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인의 경우 효과적인 사범공조 및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 자유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체약당사국의 법체계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꾀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 등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효과를 갖는 비형사적 제재를 관련법인에게 부라하여야 한다.
- ③ 각 제약당사국은 단해 뇌물 및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또는 이에 상용하는 가치의 재산이 압수 · 물수되거나 그에 상용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 추가적인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관할권)

- ①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국 영토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자국민이 해외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중뢰죄에 대하여도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기소할 수 있는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현약

관합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2개국이상의 체약 당사국이 관한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일방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기소를 위한 최적 관한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혐의하여야 한다.
- ④ 각 체약당사국은 관할권에 관한 자국의 현행 근거가 외국공무 원에 대한 증퇴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점토하고,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

외국공무원에 대한 중뢰죄의 수사 및 기소는 각 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 수사 및 기소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외국과의 관계에 미칠 잠계적 영향 또는 관련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시효)

외국공무원에 대한 중뢰죄에 적용되는 시효규정은 그 수사 및 기소를 하는 데 적절한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자금세탁)

자국의 자금세탁 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자국공무원에 관한 뇌물좌를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각 제약당사국은, 외국공무 원에 대한 증회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에 따라 그 행위지에 관계없이 이를 전제범죄로 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①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장부·기록의 유지, 재무제표의 공개 및 회계· 감사기준에 관한 자국의 법령 체제하에서, 그러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외국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은낙할 목적으로 정부누락제정의 설정, 장부누락거래 또는 부적절한 내역의 거래, 실제하지 아니하는 지출의 기입, 채무 대상에 대한 부정확한 채무내역기입 기타 허위문서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띄워하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

② 각 체약당사국은 위와 같은 회사에 의한 장부·기록·회계 및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누락 및 하위기재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민사적·행정적 또는 형사적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사법공조)

- ①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범령·관련조약 및 약정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안에서, 이 협약에서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송절차, 그리고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법인에 대하여 취하는 이 협약상의 비행사적 절차와 관련하여, 타방제약당사 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공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요청 체약당사국은 그 요청을 텃발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또는 기록,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 요청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를 지체없이 요청한 체약당사국에 통보 하여야 한다.
- ② 체약당사국이 쌍방가벌성의 존재를 사법공조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조요청 범죄가 이 협약의 작용범위안에 있는 것이면 쌍방가벌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③ 각 체약당사국은 은행비밀을 이유로 이 협약의 적용범위안에 있는 형사적 사항에 대한 사법공조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법죄인인도)

-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현약
- ① 외국공무원에 대한 중뢰죄는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체약당사 국가 범죄이어도조약사 어두대상범죄에 포한되는 것으로 가주 되어야 한다
 - ②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체약당 사국이 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의 요청을 받은 경우, 피요청 체약당사국은 외국곳무원에 대한 즛뢰죄와 관련하여 이 현약 음 범죄인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함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중뢰죄에 대하여 자국민을 인도하거나 동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름 취하여야 한다.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공무원에 대하 주뢰죄를 벌하 자의 인도요청을 거적하는 체약당사군은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관할 기관에 당해 사건을 이첩하여야 하다
 - ④ 외국곳무원에 대한 중뢰죄로 인한 범죄인인도는 각국의 국내법 · 조약 및 약정에 규정되 조건에 따라야 하다 체약당사군이 쌍방가벌성을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범죄인인도가 요첫된 범죄가 이 현약 제1조의 적용범위안인 때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 것으로 가주되어야 한다

제11조(담당기관)

혐의에 관한 제4조제3항, 사법공조에 관한 제9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제10조름 이행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하나 또는 복수의 기관을 요첫 및 요첫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젓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기관은 체약당사국간의 다른 현정에 영향음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닷해국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연락창구의 역할을 한다.

제12조

(감시 및 후속조치)

제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약당사국간의 총의로 달리 정하여지 아나라는 한, 이는 경제 협력개발기구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입단의 체제안에서 행하여 지며, 그 위임규정에 따라 또는 이 작업단을 숙제한 기구의 위임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당해 기구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비용을 부탁하여야 하다.

제13조 (서명 및 가입)

- ① 이 협약의 발효시까지, 이 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및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단에 정식참가국으로 초청된 비회원 국에 대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② 협약발효후 이 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단 또는 그 승계기구의 정식참가국중 비서명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다

제14조 (비준 및 수탁처)

- ① 이 협약은 각 서명국의 법에 따라 수락 · 승인 또는 비준된다.
- ② 수락서 · 승인서 ·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처가 되다

제15조(발효)

- ① 이 협약은 DAFFE/IME/ERIG/718에 가제된 10대 수출국으로서 누적수출액이 이 10대 수출국 전체 수출액의 6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의 수락서 · 승인서 또는 비준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발효후 그러한 문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② 이 협약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위 제1항에 의하여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락서·승인서 또는 비준서를 기탁한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현약

서명국은 수탁처에 대한 서면으로 제2항에 의하여 이 협약의 발효를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그러한 서명국에 대하여 최소한 2개국에 의한 상기 선언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다 이 현약은 발효후 그러하 선언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박효하다

제16조(개정)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이 현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되 개정안은 수탁처에게 제출되며, 이 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 되는 체약당사국회의 개최 60일전에 다른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체약닷사국가의 총의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또는 체약닷사국이 총의로 격정하는 방신에 의해 채택되 개정안은 모든 체안당사군에 의한 비준서 ·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개젓안 채택 당시 체약당사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효하다

제17조(탈퇴)

체약당사군은 수타자에게 서면 통고를 한으로써 이 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고 접수일 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 다. 탈퇴후에도, 체약당사국과 탈퇴국간에 탈퇴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 계류즛이었던 모든 사법곳조 및 범죄인인도의 요청에 관한 협조는 지속되어야 한다.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dopted by the Negotiating Conference on 21 November 1997

Preamble

The Parties

Considering that bribery is a widespread phenomenon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which raises serious moral and political concerns, undermines good gover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distorts international competitive conditions;

Considering that all countries share a responsibility to combat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aving regard to the Revised Recommenda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dopted by the Council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on 23 May 1997, (097)123/FINAL, which, inter alia, called for effective measures to deter, prevent and combat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particular the prompt criminalisation of such bribery in an effective and co-ordinated manner and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common elements set out in that Recommendation and with the jurisdictional and other basic legal principles of each country;

Welcoming other recent developments which further advanc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combating bribery of public officials, including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the World Brak,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the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European Union:

Welcoming the efforts of companies, business organisations and trade unions as well as oth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to combat bribery;

Recognising the role of governments in the prevention of solicitation of bribes from individuals and enterprise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ecognising that achieving progress in this field requires not only efforts on a national level but also multilateral co-operation, monitoring and follow-up;





Recognising that achieving equivalence among the measures to be taken by the Parties is an essential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which requires that the Convention be ratified without derogations affecting this equivalence;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Offence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 1. 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that it a criminal offence under its law for any person intentionally to offer, promise or give any undue pecuniary or other advantage, whether directly or through intermediaries,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for that official or a third party, 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in order to obtain or retain business or other improper advantage in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business.
- 2. Each Party shall take any measures necessary to establish that complicity in, including incitement, aiding and abetting, or authorisation of an act of foreign public official shall be a criminal offence. Attempt and conspiracy to bribe a foreign public official shall be criminal offences to the same extent as attempt and conspiracy to bribe a public official of that Party.
- The offence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above 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 a. "foreign public official" means any person holding a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judicial office of a foreign country, whether appointed or elected; any person exercising a public function for a foreign country, including for a public agency or public enterprise; and any official or agent of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sation;

- b. "foreign country" includes all levels and subdivisions of government, from national to local;
- c.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includes any use of the public official's position, whether or not within the official's authorised competence.

Article 2 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s

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its legal principles,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Article 3 Sanctions

- 1.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shall be punishable by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criminal penalties. The range of penalties shall be comparable to that applicable to the bribery of the Party's own public officials and shall, in the case of natural persons, include deprivation of liberty sufficient to enable effective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 2. In the event that, under the legal system of a Party, criminal responsibility is not applicable to legal persons, that Party shall ensure that legal persons shall be subject to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non-criminal sanctions, including monetary sanctions, for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 3. 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provide that the bribe and the proceeds of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or property the value of which corresponds to that of such proceeds, are subject to seizure and confiscation or that monetary sanctions of comparable effect are applicabl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4. Each Party shall consider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civi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upon a person subject to sanctions for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Jurisdiction Article 4

- 1. 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when the offence is committed in whole or in part in its territory.
- 2. Each Party which has jurisdiction to prosecute its nationals for offences committed abroad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to do so in respect of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according to the same principles.
- 3. When more than one Party has jurisdiction over an alleged offence described in this Convention, the Parties involved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consult with a view to determining the most appropriate jurisdiction for prosecution.
- 4. Each Party shall review whether its current basis for jurisdiction is effective in the fight against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if it is not, shall take remedial steps.

Article 5 Enforcem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shall be subject to the applicable rules and principles of each Party. They shall not be influenced by considerations of national economic interest, the potential effect upon relations with another State or the identity of the natural or legal persons involved.

Article 6 Statute of Limitations

Any statute of limitations applicable to the offence of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shall allow an adequate period of time for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is offence.

Article 7 Money Laundering

Each Party which has made bribery of its own public official a predicate offence for the purpose of the application of its money laundering legislation shall do so on the same terms for the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without regard to the place where the bribery occurred.

Article 8 Accounting

- 1. In order to combat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effectively, each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within the framework of fits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books and records,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s, and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to prohibit the establishment of off-the-books accounts, the making of off-the-books or inadequately identified transactions, the recording of non-existent expenditures, the entry of labilities with incorrect identification of their object, as well as the use of false documents, by companies subject to thos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bribing foreign public officials or of hiding such bribers.
- Each Party shall provid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civil, administrative or criminal penalties for such omissions and falsifications in respect of the books, records, accounts and financial statements of such companies.

Article 9 Mutual Legal Assistance

1. Each Party shall,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under its laws and relevant treaties and arrangements, provide prompt and effective legal assistance to ano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proceedings brought by a Party concerning offences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and for non-criminal proceedings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brought by a Party against a legal person. The requested Party shall inform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requesting Party, without delay, of any additional information or documents needed to support the request for assistance and, where requested, of the status and outcome of the request for assistance.
- 2. Where a Party makes mutual legal assistance conditional upon the existence of dual criminality, dual criminalit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the offence for which the assistance is sought is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 3. A Party shall not decline to render mutual legal assistance for criminal matters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on the ground of bank secrecy.

Article 10 Extradition

-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as an extraditable offence under the laws of the Parties and the extradition treaties between them.
- 2. If a Party which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n extradition treaty receives a request for extradition from another Party with which it has no extradition treaty, it may consider this Convention to be the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the offence of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 3. Each Party shall take any measures necessary to assure either that it and cardiate its nationals or that it can prosecute its nationals for the offence of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A Party which declines a request to extradite a person for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is its national shall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 4 Extradition for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is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domestic law and applicable treaties and arrangements of each Party. Where a Party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upon the existence of dual criminality, that condition shall be deemed to be fulfilled if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sought i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Article 11 Responsible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Article 4, paragraph 3, on consultation, Article 9,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Article 10, on extradition, each Party shall notify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ECD an authority or authorities responsible for making and receiving requests, which shall serve as channel of communication for these matters for that Party, without prejudice to other arrangements between Parties.

Article 12 Monitoring and Follow-up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carrying out a programme of systematic follow-up to monitor and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Unless otherwise decided by consensus of the Parties, this shall be done in the framework of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ccording to its terms of reference, or within the framework and terms of reference of any successor to its functions, and Parties shall bear the costs of the programm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pplicable to that body.

Article 13 Signature and Accession

- Until its entry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OECD members and by non-members which have been invited to become full participants in its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2. Subsequent to its entry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non-signatory which is a member of the OECD or has become a full participant in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r any successor to its functions. For each such non-signatory,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six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rticle 14

Ratification and Depositary

-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acceptance, approval or ratification by the Signator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aws.
- Instruments of acceptance, approval,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ECD, who shall serve as Depositary of this Convention.

Article 15 Entry into Force

-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sixtieth day following the date upon which five of the ten countries which have the ten largest export shares set out in DAFFE/IME/JRR(97)18/FINAL/annexed), and which represent by themselves at least sixty per cent of the combined total exports of those ten countries,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acceptance, approval, or ratification. For each signatory depositing its instrument after such entry into forc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sixtieth day after deposit of its instrument
- 2. If, after 31 December 1998, the Convention has not entered into force under paragraph 1 above, any signatory which has deposited its instrument of acceptance, approval or ratification may declare in writing to the Depositary its readiness to accept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under this paragraph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for such a signatory on the sixtieth day following the date upon which such declarations have been deposited by a I teast two signatories. For each signatory depositing its declaration after such entry into force,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six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Article 16 Amendment

Any Party may propose the amendment of this Convention. A proposed amend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Depositary which shall communicate it to the other Parties at least sixty days before convening a meeting of the Parties to consider the proposed amendment. An amendment adopted by consensus of the Parties, or by such other means as the Parties may determine by consensus, shall enter into force sixty days after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all of the Parties, or in such other circumstances as may be specifi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Article 17 Withdrawal

A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Convention by submitt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Depositary, Such withdrawal shall be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After withdrawal, co-operation shall continue between the Parties and the Party which has withdrawn on all requests for assistance or extradition made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withdrawal which remain pending.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1조 (모전)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벅한으로써 건정하 국제상거래 직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 (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곳무원듯"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다

-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좃사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 기능 수행자
 - 가 외국정부로부터 곳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 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3.24]

제3조 (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급액 이하의 범극에 처하다
-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다
 -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 2.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박의 중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소를 받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법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법칙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취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윤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나라다. [전문기점 2010.3.2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5조 (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목수한다 [정문개정 2010 3 24]

부칙 (제5588호

이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 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를위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남부터 시행하다

부칙 〈제10178호, 2010.3.24〉

1998 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ct on Preven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rticle 1 Purpose

This Act is aimed at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sound practice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t providing for the detail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y means of criminalising the act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rticle 2 Scope of Foreign Public Official

The term "foreign public official" refers to any person who falls within one of the followings:

- any person, whether appointed or elected, holding a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judicial office of a foreign government(here and after, including all levels of government from national to local):
- any person who falls within one of the followings and exercises public function for a foreign government:
 - a. any person conducting a business, in the public interest, delegated by a foreign government;
 - b. any person working for a public organization or agency established by law to carry out specific business in the public interest:
 - c. an executive or employee of any enterprise over which a foreign government holds over 50 percent of its subscribed capital or exercises substantial controlling power over its overall management including the decision of major business and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its executives. This subparagraph shall not be applicable to an executive or employee of those enterprises operating on a competitive basis equivalent to entities of ordinary private economy, without preferential subsidies or other privileges;
- 3. any person working for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Act on Preven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rticle 3 Criminal Responsibility of Briber

- 1. Any person, promising, giving or offering bribe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in relation to his/her official business in order to obtain improper advantage in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hall be subject to a maximum of 5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up to 20,000,000 won. In the event that the profit obtained through the offence exceeds a total of 10,000,000 won, the person shall be subject to a maximum of 5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up to twice the amount of the profit.
- 2. Those perons shall not be subject to paragraph 1 above if:
 - a. such payment is permitted or required by the law of the foreign public official's country;
 - b. small pecuniary or other advantage is promised, given or offered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engaged in ordinary and routine work, in order to facilitate the legitimate performance of the official's business.
- 3. The prescribed amount of fine shall be concurrently imposed on the person wh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the offence prescribed in paragraph 1.

Joint Penal Provisions Article 4

In the event that a representative, agent, employee or other individual working for legal person has committed the offence as set out in Article 3(1) in relation to its business, the legal person shall also be subject to a fine up to 1,000,000,000 won in addition to the imposition of sanctions on the actual performer. In case that the profit obtained through the offence exceeds a total of 500,000,000 won, it shall be subject to a fine up to twice the amount of the profit. If the legal person has paid due attention or exercised proper supervision to prevent the offence against this Act, it shall not be subject to the above sanctions.

Article 5 Confiscation

In case that the offender under this Act(including legal persons punishable pursuant to Article 4) is in possession of the bribe given in the commission of offence as prescribed in this Act or that the bribe is obtain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offender, with knowledge, after the offence has been committed, the bribe shall be confiscated.

Addendum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upon which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nters into force for the

Republic of Korea.

Addendum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회 권고

2009년 11월 26일 이사회 채택

본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 체결된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 제3조, 제5조 a)항 및 b)항을 유의하고.

1997년 11월 21일 체결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을 유의하고

본 권고안이 현재 따르고 있는 1997년 5월 23일 채택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개정권고 [C(97)123/FINAL]" (이하, "1997년 개정 권고")를 유념하고.

2000년 5월 25일 채택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장무원에 대한 추가격 뇌물방지를 위한 조제조치 이사회 권고 [02009] 6십『와, 2006년 12월 14일 채택된 "뇌물 및 국적 수출신용에 대한 권고 [c(2006)163]"와, 1996년 5월 7일 채택된 "양자 원조 조달에 관한 반부폐 개발원조위원회 권교 [DCD/DAC(96)11/FINAL", 및 2000년 6월 27일 채택된 "OB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0(2009)96/REVIT'® 유의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과 "1997년 개정권고"의 이행 진척사항을 고려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과 동 협약 주석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뇌물제공이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만연된 현상으로서, 심각한 도덕적·정치적 우려를 야기하고 굿거비년스와 지속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국제적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모든 국가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2007년 11월 21일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된 "외국 뇌물제공 설립을 위한 공동 의지에 대한 성명시"와, 2009년 6월 19일 "뇌물방지작업반"에 의해 채택된 "국제상거래상 뇌물 수수에 관한 정책 성명시", 및 2009년 6월 25일 "OECD 보고이사회 시 채택된 성명서(C/MIN(2009)5/FINALI"에서 재확인 된 바와 같이, 특히 그 법접행에 있어서 "OECD 뇌물방지협약"의 갓려하며 포함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제차 갓조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과 "유엔반부패협약(UNCAC)"이 상호 보완, 지원하고 있으며, 유엔반부패협약의 비준과 이행이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들의 뇌물 수수행위를 척결하는데 포괄적인 정근방법을 취합 수 있도록 당반청체주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유럽이사회와 유럽연합 및 미주기구 등의 행동조치를 포함, 국제상 거래에서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국제적 이해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진전사항들을 환영하고,

뇌물 수수 척결을 위한 기업, 재계 단체, 노동조합 및 비정부 기구 등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다자간 협력과 엄격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가 필요 함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일반사항

I. 본 이사회는 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회 권고"가 OECD 회원국과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에 (이하 "협약당사국") 적용되어야 함을 주지하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회 권교

- I. 본 이사회는 협약당사국이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외국공무원 들에 대한 증뢰를 저지, 예방, 척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한다.
- II. 본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검토하거나 추가적으로 검토 하기 위해, 각 협약당사국이 관할권 및 기타 기본적 법률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i) 외국 뇌물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서의 인식 제고 이니셔티브;
 - ii) OECD 뇌물방지 협약, 본 권고 4, 5, 6, 7절 및 본 권고 부속서 1에 제시된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 협약의 특별 조항 이행을 위한 모범 관행 지점" 에 따르는 형변과 해당 범의 적용:
 - iii) 본 권고의 8절 및 "200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조세조치 이사회 권고"에 따라, 외국 뇌물을 지원하는 모든 간접적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세제의 입법, 규제 및 관행:
 - iv) 본 권고의 9절에 따라, 외국 뇌물을 보고토록 보장하는 규정과 조치;
 - v) 본 권고의 10절을 따르는 기업, 기업회계, 외부 감사 및 내부 통제, 윤리, 감사 요건 및 관행;
 - vi)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감독을 위해 충분한 기록을 생성·보관토록 하는 법과 규제;
 - rii) 본 권고의 11, 12절에 따르며, 뇌물 관련 사건의 경우, 제재 조치로서 공공 보조금, 허가, 정부 조달 계약, 공적 개발 원조 기금을 지원 받는 계약, 공작수출신용 및 기타 공적 특권이 배제되어 지도록 하고;

- viii) 외국 뇌물 척결음 위한 민법 상법 햇젓법 및 규제;
- ix) 본 권고의 13절에 따라 수사 및 기타 소송 절차에서의 국제적 협력;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의 범죄화

- Ⅳ. 본 이사회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실행을 위해, 회원국이 본 권고에 포함된 부속서 1에 규정된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 협약의 특별 조항 이행을 위한 모범관행지함'을 충실히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V. 본 이사회는 회원국이 외국공무원의 국제적 뇌물 제공 행위를 효과적으로 착결하기 위해, OECD 반부패 협약 이행을 위한 자국 법과 법집행에 대한 접근 방식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다.
- W. 본 이사회는 특히 지속 경제 발전과 법치주의에 미치는 소액 급행료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 것을 권고한다:
 - i) 효과적 근절을 위해, 소액 급행료 지급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정책과 접근 방식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 ii) 소액 급행료를 지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액 급행료 지급이 불법 행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정부와 금융 기록에 그 지급 내역이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함을 인지하여, 내부 기업 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소액 급행료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억제하기를 강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의 권교

W. 본 이사회는 모든 국가가 소액 급행료의 요구와 수뢰를 방지 하기 위하여 국내 뇌물 제공 및 요구 관련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제고를 촉구하다

뇌물의 세금 감면

Ⅷ, 본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i) 각 회원국은, 특히 회원국과 OECD 뇌물방치협약당사득등에 모든 세제 목적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세금 전반 불여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힐 것과, 각 국가 법제에 따라 효과적인 법적·행정적 체계를 마련하며, 조세당국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심 스러운 외국 뇌물 발생에 대해 직절한 국내 사법당국에 신고 함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하는 '2009 국제상가례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자를 위한 조세 조치 이사회 권고'를 충실하고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축구한다.
- ii) 회원국은 "200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조세조치 이사회 권고"에 따라, OECD 재정위원회의 감독·지원을 촉구한다.

외국 뇌물에 대한 신고

- Ⅲ, 본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i) 각국 법리에 따라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중뢰 혐의를 사법당국에 신고하기 용이한 접근 채널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ii) 각 국 법리에 따라, 업무 수행 중 감지된 국제 상거래에서 의 약국공무원에 대한 중회 현의에 대해 내부메커니즘을 통해 작 · 간접적인 수행 당국으로의 신고, 특히 해외의 재외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보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직접함 조치를 마려한 장송 게고하다
- iii)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들에 대한 증뢰 혐의에 대해 신의성실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관할 부차에 신고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근로자에게 차별조치 또는 징계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회계 요건,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 · 윤리 및 준법감시

X. 본 이사회는 각 함약당사국이 회계 요전, 외부 감사 및 내부 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와 관련된 법, 규칙, 관행 등이 다음과 같은 원칙과 일치하며, 각국 관합권 또는 기타 기본적 법률에 따라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꾀를 방지 ~ 책발 하기 위하여 충실히 작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규모, 통류, 법적 구조 및 지리적, 산업적 운영 분야들 포함하는 기업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A. 적절한 회계 요건

i) OECD 뇌물방지협약 제 8조에 따라, 각 협약당사국은 장부·기록의 유지, 재무제표의 공개 및 회계·감사기준에 편한 자국의 법령체제 하에서, 그러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외국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은닉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의 권교

할 목적으로 장부누락계정의 설정, 장부누락거래 또는 부적절한 내역의 거래, 실재하지 아니하는 지출의 기입, 채무대상에 대한 부정확한 채무내역기입, 기타 허위문서 사용 등을 규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ii) 각 협약당사국은 기업에 중요우발채무를 재무제표에 모두 공개학 것을 요구해야 한다
- iii) 각 협약당사국은 동 협약 제 8조에 따라, 위와 같은 회사에 의한 장부·기록·회계 및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누락 및 허위기제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민사적· 해정적 또는 형사적 범칙을 부과하여야 하다.

B, 독립적 외부인에 의한 회계감사

- i) 각 협약당사국은 외부감사인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에 요구 되는 자료 요구사항이 적절하지를 고려해야 한다.
- ii) 각 협약당사국과 전문가 협회는 기업의 회계, 재무제표 및 내부 통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외부감 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 iii) 각 협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 혐의의 정후를 발견한 외부감사인에 이를 경영진 및 적절한 기업 감독 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iv) 각 협약당사국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기업이 적극적이고 효과적 으로 그 신고에 대응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v) 각 협약당사국은 기업의 외부 감사인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중뢰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이나 규제당국 같이, 기업으로

부터 독립적인 주무당국에 신고토록 해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허락하는 국가는 신의성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신고한 감사인을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보장 하여야하다

- C, 내부 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
- 각 협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장려해야 한다:
- i) 각 협약당사국은 본 권고의 일부분인 "부속시2 내부 통제, 윤리, 존병감시에 관한 모범 관행 자침"을 고려하여 외국 뇌물의 예방및 적발을 위해 기업이 적절한 내부 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개발ㆍ채택 하도록 장려하다
- ii) 가 협약당사국은 부속석2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업 조직 및 전문가 협회가 기업이 외국 뇌물의 방지 및 적발을 위해 적절한 내부 통제, 윤리 및 준법 감시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개발하는데 있어,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 장려 노력을 기울 이도록 한다.
- iii) 각 협약당사국은 뇌물 예방 및 적발을 포함하는 기업 내부 통제, 윤리, 준법 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에 대하여 연차 보고서에 기업 경영전의 성명을 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 iv) 각 협약당사국은 이사회나 감사회의 감사위원회와 같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도록 장려한다.
- v) 각 협약당사국은 상급자의 압력이나 지시로 인해 전문 기준이나 윤리를 위반하기를 원하는 않는 개인이나, 신의 성실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회 권교

전문 기준이나 유리 및 법의 위반 사항을 신고함 의지가 있는 개인을 보호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함 것을 기업에 장려하다

vi) 각 현약당사국은 정부 기관이 국제 삿거래와 관련하여 곳곳 보조금 허가 정부조달 계약 곳적개발원조의 자금 후원을 받는 계약 및 곳적 수출 신용 등 곳적 특권 승인 결정에서 내부 통제 유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름 고려해야 한다

정부 조달을 포함하는 공적 특혜

- Ⅱ . 본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i) 각 현약닷사국의 법률 및 규제는 당국이 자국법을 위반하여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정된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계약이나 공적개발원조 자금 계약 듯 곳곳 계약이나 기타 공적특혜 등 관련 경쟁 입찰 참여를 상당한 정도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제재는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조달 제재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기업에 대해 부과하여야 한다.1
 - ii) "1996년 개발원조위원회의 양자간 원조 조달에 관한 반부패 규정 궈고"에 따라 간 현약당사군은 양자 가 워조 조닥에 반부패 조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제 개발 기구들에 반부패 조항의 올바른 이행을 장려하고, 모든 개발 협력 노력에 있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 해야 한다.2

¹⁾ 군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회원국 시스템은, 증뢰 여부가 형사 선고 기소 또는 행정 절차에 기반을 두는지에 대해 따라 다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상당한 증거가 뒷받치되어야 한다

²⁾ 본 조항은 DAC 회원국들 앞으로 씌여진 DAC 권고의 요약으로 모든 OFCD 회원국과 보 권고를 주소하는 OFCD 비회원국들에게도 해당된다.

iii) 각 협약당사국은 "정부 조달에서의 정점성 강화에 대한 2008년 이사회 권고(C(2008))057에 포함된 원칙을 이행 하기 위한 OECD 공공 행정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해야 하며, 유엔이나 WTQ 유럽연합등과 같은 국제 정부기관 에서의 정부조달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WTO 정부조달 현정과 같은 관련 국제 기존을 중수해야 함 성을 독려하다

공적 수출 신용

- Ⅱ . 본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i) OECD 비회원국으로서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들은
 "2006년 뇌물 및 공적 수출 신용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 ii) 각 협약당사국은 "2006년 뇌물 및 공적 수출 신용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에 포함된 원칙 이행과 감독을 위해, "OECD 수출 신용과 신용보증에 관한 작업반"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 협력

- XIII. 본 이사회는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증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각 협약당사국이 각국의 관한권 및 기타 기본적 법률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한 짓을 권고한다:
 - i) 각 협약당사국은 자발적인 또는 요청 시 정보공유, 증거 제공, 범죄인인도, 외국 공무원의 뇌물에 대한 확인, 동결, 압수, 몰수 및 뇌물 수익 회복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특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의 권교

뇌물 사건들과 관련된 수사나 기타 소송 절차에서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적 및 지역적 법집행 네트워크를 통해, 그리고 타 국가의 주무 관청과 함께 협의 또는 협력해야 하다

- ii) 각 협약당사국은 국제 개발은행 또는 지역 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정부 기관에서 문의한 신뢰할 만한 외국 공무원 증뢰 협의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한다.
- iii) 현존하는 국제적 사법공조에 대한 협정이나 합의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새로운 협정이나 합의를 체결하다.
- iv) 특히 OECD 뇌물방지협약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각국의 자국법이 협력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 v) 일부 회원국의 증거 구성 제한요소 관련 등, 뇌물 사건에 관해 회원국 간 또는 비회원국과 사법공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후속 조치 및 제도적 협의

XIV. 본 이사화는 OBCD 제정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투자위원회, 공공행정 위원회, 수출신용과 신용보증 작업반 및 기타 OECD 기구와 직절히 협력하여 OBCD 뇌물방지현약과 본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감독·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반에 지시한다. 특히, 후속조치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OECD 뇌물방지협약과 본 권고의 이행에 있어 각 협약당 사국의 진행상황에 대한 객관적 본석을 공개적으로 재공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작업반에 의해 순차적으로 각 협약 당사국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지속적 상호 평가제도 등 여러 조치의 충실한 이행 촉구를 위해, 동 협약과 권고 이행에 대한 업격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속
- ii) 동 협약과 권고의 이행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맡은 협약당사국의 관련 당국들이 OECD뇌동방지작업반에 제출한 통지나 기타 정보의 수령
- iii) 수사 및 기소에 관해, 비기밀성 정보를 포함하여 동 협약과 권고의 이행을 위해 협약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기적 보고
- iv) 외국 공무원 증퇴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관련된 모범사례와 공통적인 이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외국 뇌물 범죄에 대한 범정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법당국 공무원들의 자발적 회의 개최
- v) 유형분류체계나 국가간 비교연구 등을 통한 외국 뇌물과 관련된 지배적 추세, 이슈 및 대책에 대한 조사.
- vi) 비기밀성 법집행 데이터, 연구 및 뇌물 위협 평가의 자발적 제출과 공개 보고 등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후속조치 및 인식제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과 메커니즘의 개발
- vii) 동 협약과 권고의 이행상황과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일반 정보를 대중에 공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추가적 뇌물방지를 위한 이사의 권교

XV. 본 이사회는 협약당사국들이 1960년 12월 14일 체결된 OECD에 관한 협약 제3조와 OECD 뇌물방지협약 제12조에 따른 후속조치 프로그램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의무에 대해 주목하다

비회원국과의 협력

- XVI. 본 이사회는 주요 수출국이거나 외국 투자가인 비회원국들 에게 동 협약과 권고를 따르고 이행하며, 제도적 후속 조치나 이행 체계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다.
- XMI, 본 이사회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반이 동 협약과 권고 및 후속조치의 이행 참여 중진을 위해 동 협약의 미비준국가 들에게 협의의 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국제 정부 기구 및 비정부 기구와의 관계

XMI. 본 이사회는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작업반에 국제 상거래에 서의 외국 공무원 뇌물 증회 근절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국제 금융 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하며, 이 분야에서 비정부기구와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업계 대표자 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dopted by the Council on 26 November 2009

THE COUNCIL.

Having regard to Articles 3, 5a) and 5 b) of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14 December 1960;

Having regard to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f 21 November 1997 (hereinafter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Having regard to the Revise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f 23 May 1997 [C(97)123/FINAL] (hereinafter "the 1997 Revised Recommendation") to which the present Recommendation succeeds;

Having regard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ax Measures for Tru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f 25 May 2009 [C(2009)64],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of 14 December 2006 [C(2006)163], the Recommendation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n Anti-corruption Proposals for Bilateral Aid Procurement of 7 May 1996 [DCD/DAC(96)11/FINAL], an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f 27 June 2000 [C(2000)6/REW1].

Considering the progress which has been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e 1997 Revised Recommendation and reaffirming the continuing importance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e Commentaries to the Convention: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onsidering that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s a widespread phenomenon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raising serious moral and political concerns, undermining good governance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distort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conditions;

Considering that all countries share a responsibility to combat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eiterating the importance of the vigorous and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enforcement, as reaffirmed in the Statement on a Shared Commitment to Fight Against Foreign Bribery, adopted by Ministers of the Parties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on 21 November 2007, the Policy Statement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on 19 June 2009, and the Conclusions adopted by the OECD Council Meeting at Ministerial Level on 25 lune 2009 (C/MIN/2009/8-FINAL):

Recognising that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are mutually supporting and complementary, and that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CAC support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ombating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Welcoming other developments which further advanc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regard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actions of the Council of Europe, the European Union and the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

Welcoming the efforts of companies, business organisations and trade unions as well as othe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to combat bribery; Recognising that achieving progress in this field requires not only efforts on a national level but also multilateral co-operation, as well as rigorous and systematic monitoring and follow-up:

General

- NOTES that the present Recommendation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hall apply to OECD Member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party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Repeipafter "Member countries")
- RECOMMENDS that Member countries continue taking effective measures to deter, prevent and combat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III. RECOMMENDS that each Member country take concrete and meaningful steps in conformity with its jurisdictional and other basic legal principles to examine or further examine the following areas:
 - i) awareness-raising initiativ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detecting foreign bribery;
 - ii) criminal laws and thei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ECO Anti-Ribery Convention, as well as sections IV, V, VI and VII, and the Good Practice Guidance on Implementing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s set out in Annex I to this Recommendation;
 - iii) tax legislation, regulations and practice, to eliminate any indirect support of foreign bribery, in accordance with the 2009 Council Recommendation on Tax Measures for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section VIII of this Recommendation:

- iv) provisions and measures to ensure the reporting of foreign bribery, in accordance with section IX of this Recommendation:
- v) company and business accounting, external audit, as well as internal control, ethics, and compliance requirements and practic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X of this Recommendation:
- vi) laws and regulations on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o ensure that adequate records would be kept and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 vii) public subsidies, licences,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contracts funded b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or other public advantages, so that advantages could be denied as a sanction for bribery in appropriate cases, and in accordance with sections XI and XII of this Recommendation:
- viii) civil,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to combat foreign bribery;
 - ix)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vestigations and other legal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section XIII of this Recommendation.

Criminalisation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V. RECOMMENDS, in order to ensure the vigorous and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hat Member countries should take fully into account the Good Practice Guidance on Implementing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et forth in Annex I hereto,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Recommendation.

- V. RECOMMENDS that Member countries undertake to periodically review their laws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eir approach to enforcement in order to effectively combat international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 VI. RECOMMENDS, in view of the corrosive effect of small facilitation payments, particularly o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 that Member countries should:
 - i) undertake to periodically review their policies and approach on small facilitation payments in order to effectively combat the phenomenon;
 - ii) encourage companies to prohibit or discourage the use of small facilitation payments in internal company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recognising that such payments are generally illegal in the countries where they are made, and must in all cases be accurately accounted for in such companies' books and financial records.
- VII. URGES all countries to raise awareness of their public officials on their domestic bribery and solicitation laws with a view to stopping the solicitation and acceptance of small facilitation payments.

Tax Deductibility

VIII. URGES Member countries to: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i) fully and promptly implement the 2009 Council Recommendation on Tax Measures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which recommends in particular "that Member countries and other Parties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explicitly disallow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s to foreign public officials, for all tax purposes in an effective manner", and that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systems" they "establish an effective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and provide guidance to facilitate reporting by tax authorities of suspicions of foreign bribery arising out of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o the appropriate domestic law enforcement authorities".
- ii) support the monitoring carried out by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as provided under the 2009 Council Recommendation on Tax Measures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Reporting Foreign Bribery

- IX. RECOMMENDS that Member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 easily accessible channels are in place for the reporting of suspected acts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o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principles;
 - ii) appropriate measures are in place to facilitate reporting by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those posted abroa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n internal mechanism, to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suspected acts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 transactions detected in the course of their work,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principles:
- iii) appropriate measures are in place to protect from discriminatory or disciplinary action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who report in good faith and on reasonable ground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suspected acts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ccounting Requirements, External Audit, and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X. RECOMMENDS that Member countries take the steps necessary, taking into account where appropriate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a company, including its size, type, legal structure and geographical and industrial sector of operation, so that laws, rules or practices with respect to accounting requirements, external audits, and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are in lin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are fully used in order to prevent and detect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according to their jurisdictional and other basic legal principles.

A. Adequate accounting requirements

i) Member countries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books and records,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s, and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to prohibit the establishment of off-the-books accounts, the making of off-the-books or inadequately identified transactions, the recording of nonexistent expenditures, the entry of liabilities with incorrec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dentification of their object, as well as the use of false documents, by companies subject to thos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bribing foreign public officials or of hiding such bribery;

- ii) Member countries should require companies to disclose in their financial statements the full range of material contingent liabilities;
- iii) Member countries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vid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civil, administrative or criminal penalties for such omissions and falsifications in respect of the books, records, accounts and financial statements of such companies.

B. Independent External Audit

- i) Member countries should consider whether requirements on companies to submit to external audit are adequate;
- ii) Member countrie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should maintain adequate standard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external auditors which permits them to provide an objective assessment of company accounts, financial statements and internal controls;
- iii) Member countries should require the external auditor who discovers indications of a suspected act of 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 to report this discovery to management and, as appropriate, to corporate monitoring bodies;
- iv) Member countries should encourage companies that receive reports of suspected acts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from an external auditor to actively and effectively respond to such reports;
 - v) Member countries should consider requiring the external

auditor to report suspected acts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to competent authorities independent of the company, such as law enforcement or regulatory authorities, and for those countries that permit such reporting, ensure that auditors making such reports reasonably and in good faith are protected from legal action.

C.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Member countries should encourage:

- i) companies to develop and adopt adequate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detecting foreign bribery, taking into account the Good Practice Gu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set forth in Annex II hereto,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Recommendation;
- ii) business organis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where appropriate, in their efforts to encourage and assist companie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in developing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detecting foreign bribery, taking into account the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set forth in Annex II hereto;
- company management to make statements in their annual reports or otherwise publicly disclose their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including those which contribute to preventing and detecting bribery;
- iv) the creation of monitoring bodies, independent of management, such as audit committees of boards of directors or of supervisory boards;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v) companies to provide channels for communication by, and protection of, persons not willing to violate professional standards or ethics under instructions or pressure from hierarchical superiors, as well as for persons willing to report breaches of the law or professional standards or ethics occurring within the company in good faith and on reasonable grounds, and should encourage companies to take appropriate action based on such reporting;
- vi) their government agencies to consider, wher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re concerned, and as appropriate,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in their decisions to grant public advantages. including public subsidies, licences,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contracts funded b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Public Advantages, including Public Procurement

XI RECOMMENDS:

- i) Member countries' laws and regulations should permit authorities to suspend, to an appropriate degree, from competition for public contracts or other public advantages, including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contracts funded b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nterprises determined to have bribed foreign public officials in contravention of that Member's national laws and, to the extent a Member applies procurement sanctions to enterprises that are determined to have bribed domestic public officials, such sanctions should be applied equally in case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1)
- ii) In accordance with the 1996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Recommendation on Anti-corruption Proposals

¹⁾ Member countries' systems for applying sanctions for bribery of domestic officials differ as to whether the determination of bribery is based on a criminal conviction, indictment or administrative procedure. but in all cases it is based on substantial evidence.

for Bilateral Aid Procurement, Member countries should require anti-corruption provisions in bilateral aid-funded procurement, promote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rovision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ions, and work closely with development partners to combat corruption in al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⁵⁰

iii) Member countries should support the efforts of the OECD Public Governance Committee to implement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2008 Council Recommendation on Enhancing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C(2005)105], as well as work on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in other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s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and the European Union, and are encouraged to adhere to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XII RECOMMENDS:

- Countries Party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hat are not OECD Members should adhere to the 2006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 ii) Member countries should support the efforts of the OECD Working Party on Export Credits and Credit Guarantees to implement and monitor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2006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Bribery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²⁾ This paragraph summarises the DAC recommendation, which is addressed to DAC members only, and addresses it to all OECD Members and eventually non-member countries which adhere to the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 XIII. RECOMMENDS that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effectively combat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conformity with their jurisdictional and other basic legal principles, take the following actions:
 - i) consult and otherwise co-operate with competent authorities in other countries, and, as appropriate, international and regional law enforcement networks involving Member and non-Member countries, in investigations and other legal proceedings concerning specific cases of such bribery, through such means as the sharing of information spontaneously or upon request, provision of evidence, extradition, and the identification, freezing, seizure,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the proceeds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 seriously investigate credible allegations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referred to them by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s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 make full use of existing agreements and arrangements for mutual international legal assistance and where necessary, enter into new agreements or arrangements for this purpose;
 - iv) ensure that their national laws afford an adequate basis for this co-operation,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and 10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 v) consider ways for facilitating mutual legal assistance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with non-Member countries in cases of such bribery, including regarding evidentiary thresholds for some Member countries.

Follow-up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 XIV. INSTRUCTS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o carry out an ongoing programme of systematic follow-up to monitor and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is Recommend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Committee for Fiscal Affairs,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the Investment Committee, the Public Governance Committee, the Working Party on Export Credits and Credit Guarantees, and other OECD bodies, as appropriate. This follow-up will include, in particular.
 - i) continuation of the programme of rigorous and systematic monitoring of Member countries'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is Recommendation to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se instruments, including through an ongoing system of mutual evaluation, where each Member country is examined in turn by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on the basis of a report which will provid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progress of the Member country i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is Recommendation, and which wi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 ii) receipt of notifications and other information submitted to it by the Member countries concerning the authorities which serve a channels of communication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is Recommendation:
 - regular reporting on steps taken by Member countries to implement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is Recommendation, including non-confidential information on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iv) voluntary meetings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directly involved in the enforcement of the foreign bribery offence to discuss best practices and horizontal issues relating to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 v) examination of prevailing trends, issues and countermeasures in foreign bribery, including through work on typologies and cross-country studies;
- vi) development of tools and mechanisms to increase the impact of monitoring and follow-up, and awareness raising, including through the voluntary submission and public reporting of non-confidential enforcement data, research, and bribery threat assessments;
- vii) provision of regular information to the public on its work and activities and on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is Recommendation.
- XV NOTES the obligation of Member countries to co-operate closely in this follow-up programme,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14 December 1960, and Article 12 of the OECD Anti-Bribey Convention.

Co-operation with non Members

- XVI. APPEALS to non-Member countries that are major exporters and foreign investors to adhere to and implement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is Recommendation and participate in any institutional follow-up or implementation mechanism.
- XVII. INSTRUCTS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o provide a forum for consultations with countries which have not yet adhered, in order to

promote wider participation in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is Recommendation, and their follow-up.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XVIII. INVITES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o consult an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ive in the fight against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consult regularly with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the business community active in this field.



부속서 1: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의 특별 조항 이행을 위한 모범 관행 지침

OECD 국제상가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DECD 뇌물방지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감독 및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작업반의 평가결과 및 권교와 관련하여, 동 협약 제12조 에서 제기한 바대로 협약 특별 조항 이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한 모범 환행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왔다.

A) OECD 뇌물방지 현약 제1조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범죄

OECD 뇌물방지 협약 제1조는 외국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했을 정우, 예외를 적용하거나 변호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하다

각 협약당사국은 대중의 인식 제고 조치를 취하고 OECD 뇌물방지 협약 및 동 협약에 관한 주석 이행을 위한 자국법에 대해 구체적 인 서면 지침을 대중에 제공해야 한다.

각 협약당사국은 외국에 파건되는 자국 공무원에게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자극법에 대해서 적절한 훈련과 정보를 제공해, 외국 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편, 기업이 타 국가에서 뇌물 요구를 받았을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B) OECD 뇌물방지협약 제2조 : 법인의 책임

각 협약당사국의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의 뇌물 증퇴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 체계는 자연인이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만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다 각 협약당사국의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의 뇌물 증뢰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 체계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하다

- a, 법인의 책임을 유발하는 행위를 취한 개인의 법인내 권한 수준은 유동적이며 법인내 광범위한 의사결정체계를 반영 하다
- b.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접근 방식은 최고경영권자의행위에 의해 유발된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상기 내용과 동일하다:
 - 최고경영권자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한 경우
 - 최고 경영권자가 하급자에게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할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 최고 경영권자가 하급자를 감독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내부통제,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를 실행하지 못하여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경우

C) 중개인을 통한 증뢰의 책임

각 협약당사국은 OECD 뇌물방지 협약 제1조 및 동 협약 주석 2에서 밝힌 기능적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 법인이 중개인을 통하여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다



부속서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연약의 특별 조항 이행을 위한 모벌 과명 지칭

D) 제5조 : 법진행

각 협약당사국은 OECD 뇌물방지협약 제 5조에 따라, 국제상 거래에서 외국당무원의 중뢰적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자국의 정제적 이익, 외국과의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 또는 관련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원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적야 한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중뢰 신고는 신중하게 수사되어야 하며 신뢰 할 만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부처에서 평가한다.

각 협약당사국은 동 협약 주석 27을 고려하여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 증뢰죄에 효과적으로 조사, 기소할 수 있도록 사법 집행 당국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



Annex I:

Good Practice Guidance on Implementing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aving regard to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its programme of systematic follow-up to monitor and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OECD Anti Bribery Convention), as required by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good practice on fully implementing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has evolved as follows:

A) Article 1 of the OECD Anti Bribery Convention: The Offence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rticle 1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such a way that it does not provide a defence or exception where the foreign public official solicits a bribe.

Member countries should undertake public awareness-raising actions and provide specific written guidance to the public on their laws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e Commentaries to the Convention.

Member countries should provide information and training as appropriate to their public officials posted abroad on their laws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so that such personnel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their companies in foreign countries and appropriate assistance when such companies are confronted with brile solicitations.

B) Article 2 of the OECD Anti Bribery Convention: 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s

Member countries' systems for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hould not restrict the liability to cases where the



Annex I:

Good Practice Guidance on Implementing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usiness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natural person or persons who perpetrated the offence are prosecuted or convicted.

Member countries' systems for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hould take one of the following approaches:

- a. the level of authority of the person whose conduct triggers the liability of the legal person is flexible and reflects the wide variety of decision-making systems in legal persons; or
- b. the approach is functionally equivalent to the foregoing even though it is only triggered by acts of persons with the highest level managerial authority, because the following cases are covered:
 - A person with the highest level managerial authority offers, promises or gives a bribe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 A person with the highest level managerial authority directs or authorises a lower level person to offer, promise or give a bribe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and
 - A person with the highest level managerial authority fails to prevent a lower level person from bribing a foreign public official, including through a failure to supervise him or her or through a failure to implement adequate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C) Responsibility for Bribery through Intermediaries

Member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of the OECD Anti Bribery Convention, and the principle of functional equivalence in Commentary 2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 legal person cannot avoid responsibility by using intermediaries, including related legal persons, to offer, promise or give a bribe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on its behalf.

D) Article 5: Enforcement

Member countries should be vigilant in ensuring that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re not influenced by considerations of national economic interest, the potential effect upon relations with another State or the identity of the natural or legal persons involved, in compliance with Article 5 of the OECD Anti Bribery Convention.

Complaints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should be seriously investigated and credible allegations assessed by competent authorities.

Member countries should provide adequate resources to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o as to permit effectiv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Commentary 27 to the OECD Ant Bribery Convention.



부속서 II :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강시에 관한 모범 관행 지침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에 관한 모범 관행 지침

본 모범 관행 지침은 "DCCD 국제상기계에 있어서 의국모욕에 대한 뇌물제공방지혈약)"의 충실한 이행을 감독, 촉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제상기례에서의 나물 방지 작업반'의 관련 결과들과 권고 및: OECD 뇌물 방지 점검 체제 검토에 대한 뇌물방지작압반 과원 협의를 통한 민간과 시민사회의 공항. 그리고 OECD와 국제 민간 분야 및 시민사회 단체의 상기례 시 뇌물 예방 및 적발에 대한 지급까지의 보험을 신하라.

개 요

기업의 국제상거례 시 의국 공무원에 대한 증회(이하 '해의사물') 방지와 적받을 위한 내부통제,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를 마련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과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제단체들과 전문가 협회에 본 모범 관행 지침(이하 '지참')을 제시한다. 본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상기 프로그램 및 조쇠를 기업의 전반적인 준법감사 체제와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기업이 해외 뇌물을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해, 효과적 내부통제,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쇠를 마련하는데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활용되기를 목적으로 한다.

본 지점은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관할권 및 기타 기본적 법률 원칙 뿐 아니라 기업의 규모, 유형, 법적 체계, 지리 및 산업 분야 등, 기업의 개별 상황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A) 기업을 위한 모범 관행 지침

해외뇌물을 예방하고 직발하기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윤리, 그리고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조치는 개별 기업의 상황, 특히 (지리적, 산업 분야별 특성으로 인한) 해외뇌물의 위험성이 반영 된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단, 이러한 기업의 상황과 리스크 요소들은 기업의 내부통제,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조치의 지속적인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재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개칭하는 작업이 필요하는 작업이 이를 받았다.

다음은 기업에서 해외뇌물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이행하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항들이다.

- 해외뇌물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윤리, 준법 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에 대한 기업 고위경영진의 강력하고 명시적이며 가시적인 지원과 의지
- 2. 해외뇌물을 금지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기업 정책 명시
- 기업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뇌물의 금지와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조치의 의무적 이행
- 4. 경영, 예산과 권한의 차원에서 적절한 독립성을 유치하고 있는 한 명 이상의 기업 고위경영자에게 해외되를 관련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의 총괄을 수행하고 이사 화나 감독회의 내부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 감시체에 직접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
- 자회사를 포함,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사 조직의 모든 감독자, 책임자, 직원들의 해외뇌물 예방과 적발을 위해



부속서॥: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에 관한 모번 과행 지친

마련된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를 고려하여 고안

- i) 선물;
- ii) 접대 향우 및 비용;
- iii) 고객 여행경비;
- iv) 정치 기부금;
- v) 자선 기부, 후원;
- vi) 급행료;
- vii) 요구 및 강요;
- 6. 대라인을 비롯한, 기타 중개인, 컨설턴트, 대표자, 유통업체,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컨소시언, 합작 투자 파트너(이하 비즈니스 파트너') 통과 같은 제 3자와 계약시 발생할 수있는 해외뇌물 예방과 적발을 위해 마련된 윤리, 준법 프로그램 및 조치는 특히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를 고려하여 고안
 - i)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적절하고 정기적인 감독 및 고용과 관련된 위험요소 자산실사의 문서 기록화
 - ii) 해외뇌물 금지 관련 법 준수에 대한 기업의 의지와 뇌물 예방 및 직발을 위한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조치에 대해 비즈니스 파트너에 공지
 - iii) 비즈니스 파트너에 상호가 의지 표명을 모색
- 7. 해외뇌물의 목적이나 뇌물 은폐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장부, 기록, 계정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의 재무 회계 절차 체계 마련

- 8. 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의 모든 임직원에 실시하는 해외 뇌물 관련 기업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에 대한 교육을 문서화하고 주기적 대화가 가능한 제도 마련
- 9. 기업의 모든 임직원들이 해외뇌물 근절을 위한 윤리, 준법 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에 대한 준수를 적극적으로 지원, 독려할 수 있는 전절한 조치 마련
- 10. 특히, 해외뇌물 관련 기업의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조치의 위반, 또는 해외뇌물 근절을 위한 법 위반 시 모든 직급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절한 징계 절차 마련
- 11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한 효과적 조치 마련:
 - i) 기업의 감독자, 책임자, 직원들 뿐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기업의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에 관하여, 외국 관할권에서의 난관에 대한 긴급한 조언을 구할 때 등 필요시 자문 및 조언 제공
 - ii)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법·전문적 기준·윤리 위반 사항을 신고할 의지가 있고, 상급자의 지시나 압력에 따라 전문가 기준이나 윤리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기업의 감독자, 책임자,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보호와 그들에 의한 내부 신고 및 기밀 신고
 - iii) 상기와 같은 신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
- 12. 현장에서의 최신 경향과 국제적, 산업 분야별 기준을 고려 하여 해외되품 예방 및 적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윤리, 준범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에 대한 주기적 검토 실시



부속서॥: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에 관한 모번 과행 지친

B) 재계 단체와 전문가 협회 활동

제계 단체와 전문가 협회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놔물 예방 및 적방을 위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윤리,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조치 개발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발표된 최신 경향이나 관련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접근성 등, 해외뇌물 이슈 관련 정보의 보급
- 2. 가능한 교육, 예방, 실사 및 기타 준법감시 수단 개발
- 3. 실사 수행에 대한 일반적 자문
- 4. 뇌물 요구 및 강요 거부에 대한 지원 및 자문

Annex II: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This Good Practice Guidance acknowledges the relevant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its programme of systematic follow-up to monitor and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D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ereinafter "DECD Anti-Bribery Convention"); contribu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through the Working Group on Bribery's consultations on its review of the DECD anti-bribery instruments; and previous work on preventing and detecting bribery in business by the DECD as well as international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brodies.

Introduction

This Good Practice Guidance (hereinafter "Guidance") is addressed to companies for establishing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for preventing and detecting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thei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hereinafter "foreign bribery"), and to business organis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which play an essential role in assisting companies in these efforts. It recognises that to be effective, such programmes or measures should be interconnected with a company's overall compliance framework. It is intended to serve as non-legally binding guidance to companies in establishing effective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for preventing and detecting foreign bribery.

This Guidance is flexible, and intended to be adapted by companie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ereinafter "SM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circumstances, including their size, type, legal structure and geographical and industrial sector of operation, as well as the jurisdictional and other basic legal principles under which they operate.



Annex II: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A) Good Practice Guidance for Companies

Effective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for preventing and detecting foreign bribery should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a risk assessment addressing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a company, in particular the foreign bribery risks facing the company (such as its geographical and industrial sector of operation). Such circumstances and risks should be regularly monitored, re-assessed, and adapted as necessary to ensure the continued effectiveness of the company's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 or measures.

Companies should consider, inter alia, the following good practices for ensuring effective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detecting foreign bribery:

- strong, explicit and visible support and commitment from senior management to the company's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for preventing and detecting foreign bribery;
- a clearly articulated and visible corporate policy prohibiting foreign bribery;
- compliance with this prohibition and the related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is the duty of individuals at all levels of the company;
- 4. oversight of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regarding foreign bribery, including the authority to report matters directly to independent monitoring bodies such as internal audit committees of boards of directors or of supervisory boards, is the duty of one or more senior corporate officers, with an adequate level of autonomy from management, resources, and authority;

- 5.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designed to prevent and detect foreign bribery, applicable to all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and applicable to all entities over which a company has effective control, including subsidiaries, on, inter alia, the following areas:
 - i) gifts;
 - ii) hospitality, entertainment and expenses;
 - iii) customer travel:
 - iv) political contributions:
 - v) charitable donations and sponsorships;
 - vi) facilitation payments; and
 - vii) solicitation and extortion;
- 6.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designed to prevent and detect foreign bribery applicable, where appropriate and subject to contractual arrangements, to third parties such as agents and other intermediaries, consultants, representatives, distributors, contractors and suppliers, consortia, and joint venture partners (hereinafter "business partners"), including, inter alia, the following essential elements:
 - properly documented risk-based due diligence pertaining to the hiring, as well as the appropriate and regular oversight of business partners;
 - ii) informing business partners of the company's commitment to abiding by laws on the prohibitions against foreign bribery, and of the company'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 or measures for preventing and detecting such bribery; and
 - iii) seeking a reciprocal commitment from business partners.



Annex II: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 7. a system of financial and accounting procedures, including a system of internal controls, reasonably designed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fair and accurate books, records, and accounts, to ensure that they cannot be used for the purpose of foreign bribery or hiding such bribery;
- measures designed to ensure periodic communication, and documented training for all levels of the company, on the company'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 or measures regarding foreign bribery, as well as, where appropriate, for subsidiaries.
- appropriate measures to encourage and provide positive support for the observance of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against foreign bribery, at all levels of the company;
- 10. appropriate disciplinary procedures to address, among other things, violations, at all levels of the company, of laws against foreign bribery, and the company'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 or measures regarding foreign bribery:

11. effective measures for:

- i) providing guidance and advice to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 where appropriate, business partners, on complying with the company's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 or measures, including when they need urgent advice on difficult situations in foreign jurisdictions.
- ii) internal and where possible confidential reporting by, and protection of,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 where appropriate, business partners, not willing to violate professional standards or ethics under instructions or pressure from hierarchical superiors, as

well as for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 where appropriate, business partners, willing to report breaches of the law or professional standards or ethics occurring within the company, in good faith and on reasonable grounds; and

- iii) undertaking appropriate action in response to such reports;
- 12. periodic reviews of the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designed to evaluate and improve their effectiveness in preventing and detecting foreign bribery,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developments in the field, and evolving international and industry standards.

B) Actions by Business Organis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Business organis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may play an essential role in assisting companies, in particular SMEs,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internal control, ethics, and compiliance programmes or measur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d detecting foreign bribery. Such support may include, inter alia:

-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foreign bribery issues, including regarding releva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forums, and access to relevant databases;
- making training, prevention, due diligence, and other compliance tools available;
- 3. general advice on carrying out due diligence; and
- general advice and support on resisting extortion and solicitation.

OECD 뇌물방지협약 가이드북

- 발행일 : 2012.5 편 집 : 국제교류담당관실 전 화 : 02-360-6570~8
 - 팩 스 : 02-360-3528